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남양주시-LH 협약 체결안

의안 번호	947
----------	-----

제 출 일 : 2026. 4. 7.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왕숙신도시 및 진접2공공주택지구 조성 중 하수관로 설치가 왕숙천 내 계획되었고 남양주시의 기존 차집관로에 대한 개량 계획과 사업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통합 차집관로 사업이 논의됨
- 통합 차집관로 설치 시 일원화된 하수관로로 인해 원활한 관리가 가능해지고, 공사 중 하천 내 이중공사 및 예산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통합 차집관로 사업 추진을 위한 LH와의 협의 중에 있음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LH와 협의하여 2027년 절대공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회 안건으로 상정함
- 향후, 의회 동의 절차 후 LH와 통합 차집관로 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왕숙신도시 및 진접2공공주택지구의 최초 입주 전 준공을 위해 LH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조례」 제4조(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

3. 협약 내용

- 협약명칭 :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통합차집관로 개선사업 협약
 - 협약기관 :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협약내용 :
 - 처리구역 내 기존 발생하수와 왕숙신도시 및 진접2공공주택지구
의 발생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통합 차집관로 개선사업의 업무 및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한 사항
- (남양주시) 통합 차집관로 개선 실시설계, 인허가, 사업비 분담, 시공
(LH) 사업비 분담, 미보상 토지 보상

4. 추진실적

- 2025. 6. 25. : 협약안(2차) 검토의견 회신요청(市 → LH)
- 2025. 7. 4. : 협약안(2차) 검토의견 회신(LH → 市)
- 2026. 2. 6. : 설계 경제성 검토(VE) 완수
- 2026. 2. 13. : 협약안 용어변경 검토의견 회신요청(市 → LH)
- 2026. 3. 19. : 설계 안전성 검토 완수
- 2026. 3. 23.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신청

5. 추진계획

- 2026. 4. ~ 5. : 협약 체결(市 ↔ LH)
- 2026. 하반기. : 공사 착공
- 2027. 하반기. : 공사 준공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검토(붙임1)
-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통합 차집관로 사업계획(붙임2)
- 협약서(안)(붙임3)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와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후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해 개별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2. 시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통합 차집관로 개선사업
협 약 서

2026. 00.

남 양 주 시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남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라 한다)는 “LH” 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왕숙 공공주택지구 및 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발생하수와 처리구역 내 기존 발생하수의 처리를 위해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통합 차집관로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통합 차집관로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관련법 준수 및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 남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 “와 ”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 : 남양주사업본부, 이하 “LH” 라 한다) “간 업무범위 및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왕숙지구”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2. “진접2지구”란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3. “진건푸른물센터”란 현재 남양주시에서 운영중인 진건공공하수처리장을 말한다.
4. “공사비”란 “LH”에서 왕숙지구 및 진접2지구 조성에 따른 “LH 개별관로” 설치비용을 말하며, “시설비”란 통합 차집관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설계비, 건설사업관리비) 중 “LH”의 “원인자별 하수 발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5. “LH 개별관로”란 “왕숙지구”, “진접2지구”에서 발생

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시” 에서 기존에 관리·운영하는 관로 외 신설관로를 말한다.

6. “원인자별 하수 발생비율” (이하 “원인자 부담비율” 이라 한다)이란 “왕숙지구” 및 “진접2지구” 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본 “개선사업” 으로 신설한 차집관로에 유입되는 “시” 와 “LH” 의 하수 발생비율을 말한다.

제3조(개선사업 범위 및 기간)

① 본 협약서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선사업” 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통합 차집관로 개선사업
2. 대상지역 : 왕숙천 유역(왕숙·진접2 지구)
3. 통합차집관로 사업범위 :

진접2지구 최초 하수 유입부 ~ 진건푸른물센터

② 본 개선사업의 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부터 공사 준공시까지로 한다.

제4조(당사자별 책무)

① “개선사업”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단, “시” 에서 “개선사업” 과 관련 인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LH” 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 “시” : 공사 관련 인허가, 설계, 공사, 사업비(“공사비” 와 “시설비”) 관리·정산 등 업무
2. “LH” : “공사비” (LH 개별관로 설치비용) 납부, “시설비” 납부, 보상 업무[왕숙천(왕숙지구 구간)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보상업무

② 왕숙지구, 진접2지구 주민 최초입주를 감안하여 오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시”, “LH” 는 상호 긴밀히 협조한다.

제5조(사업비의 산정 및 분담 등)

- ① “사업비(공사비와 시설비)” 는 “시” 가 법률, 조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 ② “공사비”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비” 는 “시” 가 법률 등에 따라 “개선사업” 의 건설공사 발주 전 최종 실시설계용역 성과품에 반영된 공법 및 공정들을 기준으로 산정한 “LH 개별관로” 설치비용의 설계금액으로 한다.
 2. “LH” 는 “시” 가 산정한 “공사비” 에 대하여 성과품에 반영된 공법 및 공정 등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물량 등의 검토 절차를 가진다.
- ③ “시설비” (설계비 및 건설사업관리비)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비” 는 최종 준공 금액을 기준으로 “원인자 부담비율” 에 따라 분담한다. 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원인자 부담비율” 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
- ④ “시” 와 “LH” 는 상호 협의하에 “공사비” 를 확정한다.

제6조(사업비 납부 및 정산 등)

- ① “시” 는 본 협약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 및 “시설비” 를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 및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LH” 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LH” 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한다.
- ② “시” 는 “LH” 에게 “공사비” 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며 정

산하지 않는다. 단, 시공사의 요청에 의해 기성금 확보가 필요할 경우 양사간 협의를 통해 “공사비”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1차 : 공사 착공시, “공사비” 의 30%를 부과한다.

2. 2차 : 공사 전체공정의 50% 시, “공사비” 의 40%를 부과한다.

3. 3차 : 준공 30일 전 “공사비” 의 30%를 부과한다.

③ “시” 는 “LH” 에게 “시설비” 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시설비” 中 설계비는 최종 준공 금액을 “원인자 부담비율” 에 따라 “LH” 에 부과한다.

2. “시설비” 中 건설사업관리비는 “원인자 부담비율”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며, 최종금액으로 정산한다. 단, 용역사의 요청에 의해 기성금 확보가 필요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 .

가. 1차 : 용역 착수시 최초 계약금액의 30%를 부과한다.

나. 2차 : 용역 전체공정의 50% 시, 최초 계약금액의 40%를 부과한다.

다. 3차 : 용역 준공 후 최종 준공 금액으로 잔여금액을 부과한다.

제7조(원인자 부담비율 산정)

① “시” 와 “LH” 의 “원인자 부담비율” 은 최종 실시설계용역 성과품에 반영된 계획하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LH” 계획하수량은 “왕숙지구” 및 “진접2지구 “ 계획(변경) 하수량으로 설계한다.

② 정부정책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왕숙지구” 및 “진접2지구” 의 하수발생량 증가로 통합차집관로 관경이 확대될 경우, “시” 와 “LH” 는 상호 협조하며 LH는 변경된 하수량을 기준으로 “공사비” 와 원인자부담비율 재산정하여 사업비를 납부

한다.(다만, 통합차집관로 관경 확대가 어려울 경우 대안모색을 위하여 “시” 와 “LH” 는 상호간에 적극 협조한다)

제8조(기타 사항)

-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 ② 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 와 “LH” 가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③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때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민법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천재지변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시” 와 “LH” 는 관련 비용에 대하여 재검토한다.
- ⑤ “개선사업” 의 추진을 위해 “시” 와 “LH” 는 적극 협조하며, 이견 등으로 인해 “개선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상호 동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관할법원)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시’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남양주시

시장 주 광 덕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장 박대순